

9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(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)

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이 시행됩니다.

■ 지원대상 :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

*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추가지원

(예 외)

- 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 (全 규모)
- 사회적기업·장애인직업재활시설·자활기업 등 종사자 (全 규모)
- 55세 이상 고령자(300인 미만 까지)
-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(300인 미만 까지)

(지원제외)

- 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3억원 초과),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, 국가 등 공공부문, 인건비 재정지원사업주 등

■ 지원혜택 :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,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4만원 추가지원 (※4개월 한시)

*(예)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: (기존)11만원 → (변경)18만원

■ 지원기간 : '20년 3월~6월 지원금 (4개월분) (※지급시점: 4월 초)

■ 신청절차

	접 수	심사·지급	사후관리
오프라인	3공단(복지, 건보, 연금) 및 고용센터	⇒ (심사) 근로복지공단 (지급) 근로복지공단 ⇒	근로복지공단 + e-나라도움 (보조금시스템)
온라인	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(www.jobfunds.or.kr)		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'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)'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Q&A